2023년 제1차 국가기록원 경력경쟁채용시험(운전서기보) 공고

국가기록원에서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국가기록원장

1. 선발예정인원(명)

구분	직 급 (직 류)	선발예정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예정 지역
일반직	운전서기보 (운전)	1명	관용차량(통근버스) 운행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기록물 이송 등 업무지원	성남 ※ 나라기록관 근무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27.)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2022. 11. 15.)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47호, 2023. 1. 9.)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2021. 12. 31.)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 된 죄
 -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9급의 경우: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자격 요건 >

분야 (지역)	채용예정 인 원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자격 ○ 제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요건 *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 자격증에 한함 (필수) *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성남)	1명	【우대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경력】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 경력만 인정 (2013.02.072023.02.06. 기간 경력 중 최대 10년, 기간별 차등우대) - '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채용)되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경력증명서 상 대형승합자량 운전경력이 확인 가능해야 경력으로 인정)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에 대해 평가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담당업무·운행차종·근무형태·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출명활할 경우 확인불가 사유로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이 중복될 경우 동일 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산정 - 군경력(최근 10년 이내)의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수송 병과(운전병)로 근무한 경력 중 상기 대형승합차량을 운행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화물차량·특수차량 운전경력 제외) → 군운전경력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호 서식) 등 제출 필요 ○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상 공고일 기준 과거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이력이 확인될 경우 감점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경력조회 기간을 '전체'기간으로 지정하여 발급 * 서류 미제출, 공고일 이전 발급, 조회기간을 '전체기간'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판단 불가로 해당 요건 무효처리(해당 항목 배점 0점 처리)

분야 (지역)	채용예정 인 원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사망사고·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의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요건 무효처리(해당 항목 배점 0점 처리)		
	○【직무 관련 자격증】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자격별 차등우대) - 자동차정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소지자			
	* 2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 자격증[워드프로세서(통합 전의 경우 1급), 컴퓨터활용능력] 소지자 * 2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 우대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응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
- ※ 응시 자격 요건의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 **우대 요건**의 적용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 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의 범위]

- ▶ 우대요건 상의 근무경력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 (예시) 2년간 주 20시간 근무 시 : 2년 × (20시간/40시간) = 1년 인정
- ▶ 경력은 우대 요건에 제시된 인정 근무기관/기간 및 운전 차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부서, 직책,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u>상기 항목 미기재 또는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인정 불기</u>)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필수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서 근무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및 전산·사무 관련 자격증 보유 등

		서류전형	한격자	이워	수
--	--	------	-----	----	---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비율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수	
1명 이하	재공고	-	
2명	2명 이하	0명 ~ 2명	
3명 이상 ~ 10명 이하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3명	
11명 이상 ~ 20명 이하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4명	
21명 이상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5명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다. 기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시험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23. 2. 10.(금) ~ 2. 16.(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공고 : 2023. 03. 14.(화)
- 면접시험 : 2023. 03. 21.(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04. 18.(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기본서류 등 교부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s://www.archives.go.kr/),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3. 2. 10.(금) ~ 2023. 2. 16.(목)

다. 접수처

-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042-481-6209)
 - ※ \$\P\$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403호(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3.2.16.)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등기우편 접수 시 겉봉투는 본 공고문 22쪽의 양식을 활용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1호)	ㅇ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호)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3. 채용이력서 1부 (별지서식 3호)	o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호)	o A4 2매 내외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5호)	o A4 2매 내외로 작성
6. 주민등록초본 1부	ㅇ <u>'병역사항 포함'</u> 으로 발급
7. 운전면허증 1부	o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8. 운전경력증명서 1부	o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불인정시례) 공고일 이전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9.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8호)	○ 운전관련 경력(재직) 증명서만 제출(해당자에 한함)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①근무기간, ②업체명(근무부서), ③직위, ④담당업무, ⑤운행치종, ⑥승차인원, ⑦근무형태, ⑧주당 근무시간(예) ①12.1.21~13.1.20 ②(주)00 ③사원 ④통근버스 운행 ⑤승합(대형) ⑥45인승 ⑦상근 ⑧주당 40시간 근무 ○ 발급 확인자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포함(미포함시 하단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10. 자격증 사본 1부	o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o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 전 1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1.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12.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과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 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042-481-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무기술서 (일반직 / 운전서기보)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 관용차량 운행
주요업무	○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
	○ 기록물 이송 등 업무지원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조직헌신 등
필요지식	○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차량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응 시		관련분야 : 관용차량 운행	
자 격 자격증 요 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만 해당)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관련분야 근무경력 보유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단체에 소속되어「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 경력만 인정 (2013.02.07 2023.02.06. 기간 경력 중 최대 10년 / 기간별 차등위 ● 운전경력증명서 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공고일 이후로 '전체'기간을 경력 조회한 발급 증명서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전산·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 전의 경우 1급)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직급	응시분야	응시자격요건
		운전서기보		

■ 작성목록(총괄표) ☞ 아래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연번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제출 □ 미제출
2	응시원서_정부수입인지 부착 (필수)	□ 제출 □ 미제출
3	채용 이력서 (필수)	□ 제출 □ 미제출
4	자기소개서 (필수)	□ 제출 □ 미제출
5	직무수행 계획서 (필수)	□ 제출 □ 미제출
6	주민등록 초본 (남성 / 병역사항 포함) (필수)	□ 제출 □ 미제출
7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미제출
8	운전경력증명서 1부 (필수)	□제출 □미제출
9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i>※ 근무기관 별 발급</i>	□ 제출 □ 미제출
10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제출 자격증 사본:	□ 제출 □ 미제출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제출 □ 미제출
1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제출 □ 미제출
13	기타:	별도 개별 제출자료 기재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 표

<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3년도 제1차 국가기록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023년 월 일 **국가기록원장 귀하**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작성	성명	(한글)	
응시직급	운전서기보	₹8°5	(한자)	
주민등록 번 호	_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争)			정부수입인지
전자우편				붙이는 곳 (5,000원)
전 화 (휴대전화)				(0,000 ਜੁ)

응 시 표 (국가기록원 운전서기보 공무원 경채)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작성	응시직급	운전서기보				
성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국가기록원장 ⑩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에 배부합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르(으)	위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一 工 1 7 7 7 7	三 しこ / こ / こ / こ / こ / こ / こ / こ / こ / こ	큰	

<별지 제3호>

운전서기보 채용 이력서 서식

가. 공통사항							
응 시 번 호	공란으로 둘 것	응 지 자 급	운전서기보	응 시 요 건	자격증	성명	

나.	나. 응시자격							
자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격	<i>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i>	0000.00.00						

다.	다. 우대요건(해당자만 작성/ 증빙서류 제출)								
	근무기관	관 근무기간		ŀ량종류/ 응차정원 :는 길이)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00기업(00팀)	'00.00.00 ~'00.00.00 (18개월 10일)	승합(대형) 45인승				전임/비전임 /주00시간		
경				승합(대형) 길이 12m					
력									
	제외기간 휴		직 등 기간		휴직 등 사유				
	(휴직, 직위해제								
	기간 등)								
	교통사고 및		고 유(), 무()		※ 사고·위반사항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유()에 건수 기재				
	교통법규위반 여	부 법규위법	<u>r</u> #(), 무()	경우에는	를 뉴()에 건구 	기세		
자	자격증명	자격증 취	득일	등	급	검경	정기관		
격	자동차정비기사			7	7/./-				
	워드프로세서				1급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2023 년 펼 글 성 명: (인)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mark>연월일</mark>을 기재, 칸이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자 기 소 개 서

【작성요령】

- ①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② A4용지 2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5호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작성요령】

- ①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이해도, 업무 추진전략 등 작성
- ② A4용지 2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는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기록원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u>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u>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	않음
--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국가기록원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고난하나	공무원 채용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u>관할</u> 추이그 이그	<u>관리</u>	복수국적 여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출입국・외국	<u>(복수국적</u>	조회에 필요한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인청(사무소)	<u>조회)</u>		따라 보유 후 파기)
-1) A) T) 11 (-) T	774	자격증, 경력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자격	<u>공무원 채용</u>	학위 등 응시요건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u>중·경력·학</u>	<u>관리</u>	충족 및 제출서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 확인기관	(자격확인)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따라 보유 후 파기)</u>
	공무원 시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인사혁신처	응시자격 정지	시험연도, 시험명,	5년(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여부 회신	응시제한기간,	보관)
	<u> </u>	관보게재일, 처분청	<u> 1/</u>

-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	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8호>

경력(재직) 증명서

기 관	기관명					}업자 록번호	-			
기 인 현 황	기관형태	□ 공공기곡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공기관 □ 법인 □ 법인 □ 대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2조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	주 소				'					
	연락처	자 택:	:		휴대전	화 :				
		,	근 .	무 7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근무년한 근										
퇴사일자		년 월	일	,	ع ن	٥١	무형		근/비상· ○○시	
퇴직사유		사유 기계	7	,	견 월	일	(영 태	丁		ال
근 무 세 부 내 역										
부서명 직급 (직위) 근무>			무기건	대당업무 기간 (운행 차종 및 승차정원 반드시 명시 예. 승합(대형) 45인승 운전)						
				~						
				~						
				~						
상		포 상						징 계		
벌 사	월 일	종류	기관명	}	년	월 일		종류	7]3	관명
· 항										
					발급(확역	인) 자				(인)
					연락처 () -					
					이 메일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직 인
기관명 대표자 ○○○	

※ 가급적 본 서식을 활용하되, 기관의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①근무기간, ②업체명(근무부서), ③직위, ④담당업무, ⑤운행차종, ⑥승차인원, ⑦근무형태, ⑧주당 근무시간 및 대표자 직인, 발급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필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응시)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휴대전화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반환을 청구합니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리	⊦ 위와 i	같
				년	월 '	일
0000 7	ō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1)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운전서기보

연락처 : 000-0000-0000(핸드폰번호 기재)

받는 사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403호(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 채용담당자 앞 (042-481-6209)

[2023년 제1차 국가기록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